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재난적의료비 조기 지급 등 편의 제공을 위하여 입원 중에 의료기관 등에 직접지급 신청하는 경우 퇴원 7일 전까지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입원 기간이 7일 미만으로 짧거나 퇴원일이 7일 전에 결정되지 않는 경우 신청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여, 이미 소득·재산정보를 파악하여 확인 등의 행정절차가 불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서는 신청기한을 퇴원 3일 전까지로 개정하여 신청과정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빠른 지원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의료기관 등에 직접지급 신청 시 신청기한 완화
 - “영 제7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의료기관 등에 직접지급 신청 시 신청기한을 퇴원일 3일 전까지로 완화(안 제5조제1항 및 제3항)
- 나. 신청 서식에 신청기한 완화 내용 추가
 - ‘의료기관 등 직접지급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서’의 유의사항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은 퇴원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 내용 추가(별지 제4호서식)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미협의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보건복지부령 제 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별지 제4호서식 중 “7일”을 “7일(영 제7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3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7일”을 “7일(영 제7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3일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접지급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발생한 진료(입원 시작일이 시행일 이후인 것으로 한다)에 대해 직접 지급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